

inside BIFC

권두칼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시 지속가능연계 채권(SLB) 도입 방안 연구

부산금융중심지 유관기관 업무 소개

금융이 기술을 만나는 곳, 코스콤
- 대한민국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책임지다! -

전문가칼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inside FINANCE

국내금융시장 동향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국제금융시장

CEO of Jersey Finance, Joe Moynihan



국문 QR



영문 QR

Busan, Leap to the Global Financial Hub

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도약

Inside Busan Finance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영미법을 도입하는 방안과, 부산형 지속가능연계 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한 코스콤(KOSCOM)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 인프라 제공기관 간 연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조세 환경과 규제 동향을 살피고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합니다. 혁신적이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을 통해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기대합니다.

inside BIFC

04

권두칼럼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조성의 의미와 영미법 적용의 의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08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시 지속가능연계 채권(SLB) 도입 방안 연구

12

부산금융중심지 유관기관 업무 소개

금융이 기술을 만나는 곳, 코스콤
- 대한민국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책임지다! -
코스콤 대표이사 윤창현

16

전문가 칼럼

역외금융센터, 조세피난처와 국제조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20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inside FINANCE

22

국내금융시장 동향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29

국제금융시장 동향

신뢰받는 국제금융센터의 조건 : 저지(Jersey)의 경험
CEO of Jersey Finance, Joe Moynihan

inside APPENDIX

32

부록

- 부산 일반 현황
-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BIFC 입주기관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 금융중심지 및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안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며,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미국법연구회 회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계약법과 소비자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미국 영미법 전통과 대륙법 체계를 아우르는 비교법적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입법 및 정책 자문에도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학문적 전문성과 실무적 통찰을 겸비한 미국 영미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조성과 영미법 적용의 의의

부산, 다시 세계를 향한 질문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미 부산은 동북아의 관문이자 세계 5대 항만도시로 자리 잡았고, 한국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대표적 금융도시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머뭇거림이 남아 있다.

그 핵심에는 ‘법적 언어’의 차이가 놓여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복잡한 규제, 기술, 자본이 얽혀 움직이지만, 그 바탕에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전제된다. 세계 금융거래의 80% 이상이 영미법이나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이유도 바로 이 신뢰성 때문이다. 영미법(Common Law)은 이미 국제금융의 공통 언어, 다시 말해 금융의 공통어(Lingua Franca)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이 진정한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가 사용하는 이 법적 언어로 소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Master Agreement²의 정산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해석했다. 이 판결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분쟁을 해결할 때 따라야 할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영미법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계이다. 이는 조문 중심으로 완결성을 기하는 대륙법의 접근과는 다른 장점이다. 살아 있는 생태계와 같은 금융시장에는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며, 바로 이 점이 영미법이 선택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의 한계, 그리고 부산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일본을 모델로 한 전형적 대륙법(Civil Law) 구조이다. 성문법이 주는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은 강점이지만, 문제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력이다.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 유형이나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의 틀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예컨대 디지털 자산 거래, 블록체인 기반 신탁, DAO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판단이 멈춘다. 반면 영미법은 “이 거래의 실질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법적 공백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부산은 이미 핀테크·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금융혁신을 실험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법제는 여전히 대륙법적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언어부터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이 국제금융의 언어가 된 이유

영미법 전통은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 특징은 판례 중심의 발전 구조에 있다. 법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분쟁을 통해 진화한다. 이 특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 파생거래,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등장할 때마다 영미법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자”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며 높은 유연성을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각국은 전례 없는 법적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많은 판결이 영미법의 해석 원리를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Lomas v. Firth Rixson 사건¹은 ISDA

세계 금융허브의 공통된 전략 — 영미법 구역의 도입

세계 주요 금융허브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선택한 전략이 있다. 바로 영미법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금융법제(Common Law Zone)를 구축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영미법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교하게 조율해 왔다. 이러한 법제 환경 덕분에 두 도시는 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분쟁 해결 중심지로 성장했다.

1 Lomas v. FJB Firth Rixson Inc [2012] EWCA Civ 419 사건은 2012년 영국 항소법원에서 ISDA Master Agreement(1992년 형식)의 특정 조항 해석을 다른 판례로, 지급 의무와 조기 해지 권리 행사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2 국제 스왑 및 파생상품 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는 국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표준화된 계약서와 규정을 만드는 협회다. ISDA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장외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ISDA Master Agreement라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며, 이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분쟁 해결 방식을 규정한다. 이러한 표준 계약서 덕분에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바이 역시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중동 법체계와 별도로 영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독립적 금융지구를 만들었다. DIFC 법원은 판결문을 영어로 작성하고 영국 판사를 직접 영입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어, 중동 지역에서 국제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도 2018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설립하며 영미법 기반의 특별법 체계를 도입했다. 법원과 중재센터를 모두 영어로 운영하고 판례 축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투자자들이 낯선 시장인 중앙 아시아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외국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 금융허브의 공통된 흐름은 명확하다. 국제금융의 표준 언어인 영미법을 활용해 법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부산이 이러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면, 단순히 한국의 제2 도시라는 위치를 넘어 동북아 금융의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산형 영미법 모델의 구상

영미법 도입은 기존의 대륙법 체계를 대체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두 체계를 병행하면서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전체의 법체계는 대륙법을 유지하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같은 특정 구역에 한정하여 금융거래, 계약 해석, 분쟁 해결 분야에서 영미법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영미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국내 법 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이 요구하는 법적 유연성과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입법적 기반이다. 영미법 적용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관련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부산국제금융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법 인프라가 필요하다. 금융 분야에 특화된 독립적 법원과 국제중재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영미법권 출신의 판사와 변호사가 참여한다면 제도의 신뢰성과 국제적 수용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로스쿨, 중재기관, 금융기관이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영미법을 이해하고 실제 금융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면, 헌법적 정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제도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차별화 전략 — 디지털 해양·파생금융 생태계

부산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해양 산업과 거래소 인프라가 결합된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세계 5대 항만을 보유하고 조선·물류 산업이 집중된 부산은 해운·선박금융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파생상품 시장의 역량이 더해진다면, 부산은 자연스럽게 해양 산업 기반과 금융 기법을 결합한 ‘해양·파생금융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이 영역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로는 영미법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 선박금융, 해상보험, 파생상품 계약과 같은 분야는 전통적으로 영미

금융은 본질적으로 신뢰를 거래하는 산업입니다.
부산이 세계 자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을 넘어,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법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으며, 실제로 국제 금융·해운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런던해상중재협회(LMAA)의 중재 결정이나 1906년 제정된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은 글로벌 해상·해운 거래에서 대표적인 준거 규범으로 기능해 왔다. 부산이 영미법을 기반으로 한 금융특화지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선주와 해운기업들이 계약 체결과 분쟁 해결의 거점으로 부산을 선택할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이다. 이는 부산이 동북아 해양·금융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선박금융 시장 역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적선사 대상 선박금융은 연간 실행액 약 87억 7천만 달러, 금융잔액 약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왔다. 해운·선박금융 수요가 부산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산이 해양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부산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등 신기술을 금융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해양 물류·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해양 금융 거래에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활용한 디지털 해양금융 생태계 구축은 부산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며, 글로벌 해양·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제도 도입의 과제

물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대륙법과 영미법이 함께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조정 문제, 헌법 질서와의 정합성, 그리고 영미법 전문 판사·변호사·규제 전문가 확보와 같은 인적 기반의 구축은 모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도 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장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IFC와 AIFC의 사례에서 보듯, 적절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주의 과제들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결국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할 것인가에 있다. 부산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제금융법, 중재, 규제정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면, 부산은 제도를 설계하는 능력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장치는 단순한 설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구조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적용·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축적이야말로 부산형 금융법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의 비전 - 글로벌 규범을 품은 금융도시

금융은 본질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산업이다. 투자자는 사업성과 수익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해당 지역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평가한다. 부산이 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항만의 경관이나 비용 경쟁력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법질서, 그리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국제 자본은 부산을 신뢰하고 찾아오게 된다.

부산이 영미법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법제도의 일부를 변경 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는 부산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법적 언어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법적 신뢰를 새로운 금융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국제 금융거래의 표준이 되는 법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부산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금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 부산은 금융허브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물리적 기반시설과 행정적 지원을 넘어, 이제는 법적 기반까지 국제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 영미법이라는 글로벌 법 언어를 품은 부산은 국제 금융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부산시 지속가능연계 채권(SLB) 도입 방안 연구

부산 ESG금융시장은 국내 ESG채권 발행액의 55.7%를 차지할 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공부문의 사회적채권(S)에 편중되어 있어 환경(E) 분야와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는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지자체 지속가능연계 채권(SLB)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구조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부산의 여건에 맞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부산이 지속가능금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질적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SLB 선도 발행은 정책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금융도시로의 전환의 로드맵을 굳건히 하고, 국내 ESG 금융시장의 균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01

검토배경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 금융거래와 자본조달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ESG금융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공공 중심의 사회적채권 발행에 편중되고 민간 참여가 저조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최근 글로벌 ESG금융시장에서는 지속가능연계 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이하 SLB)이 주목받고 있다. SLB는 조달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하지 않고,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KPI)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성과연동형 채권이다. 발행기관의 조직 전반에서 ESG 성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이행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시장 확대 잠재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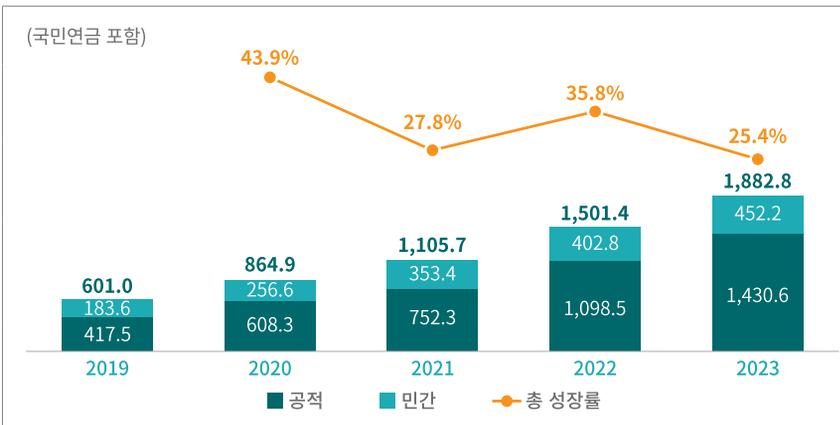
부산시는 2025년 4월 글로벌 녹색금융지수(GGFI)에서 24위를 기록하며 서울(26위)을 앞서 녹색금융 분야의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에는 ESG채권 발행이 활발한 주요 공공기관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시는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23.7)」을 통해 “녹색금융 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강한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산금융중심지가 녹색금융 특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선제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02

국내 ESG금융 현황

국내 ESG금융시장은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213.3% 성장하여 2023년 말 기준 1,882.8조 원을 기록하였다. 유형별로는 ESG투자가 795.5조 원(42.2%), ESG대출이 761.8조 원(40.5%), ESG채권 발행이 244.7조 원(13.0%), ESG금융상품이 80.7조 원(4.3%)을 차지한다.

그림 연도별 ESG금융 잔액 성장 추이



출처 : 2023 한국 ESG 금융백서(2025)

표 유형 분류 및 기준

유형	유형 상세	금액 (조원)	비중
ESG투자	주식, 채권, 대체투자	795.5	42.2%
ESG대출	기업대출, 개인대출, PF	761.8	40.5%
ESG채권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 지속가능연계 채권	244.7	13%
ESG 금융상품	보험, 예적금, 카드, 펀드	80.7	4.3%

ESG금융 유형 중 하나인 ESG채권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 채권(SLB)으로 구분되며, 2023년 국내 ESG채권 발행 규모는 24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3% 성장하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사회적채권이 211.6조 원(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공급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표 ESG채권 유형 및 특징

구분	내용
녹색 채권 Green Bond	친환경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 탄소감축, 건물에너지 효율화,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환경적 가치 창출 용도로만 사용가능
사회적 채권 Social Bond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가능
지속가능 채권 Sustainability Bond	친환경 및 사회적가치 창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녹색 및 사회적 용도 자금을 함께 조달
지속가능연계 채권 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기업의 지속가능 목표를 지표화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금융조건에 반영하는 금융상품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여부와 관계없이 범용적인 목적으로 자금조달 가능

출처 : NICE신용평가(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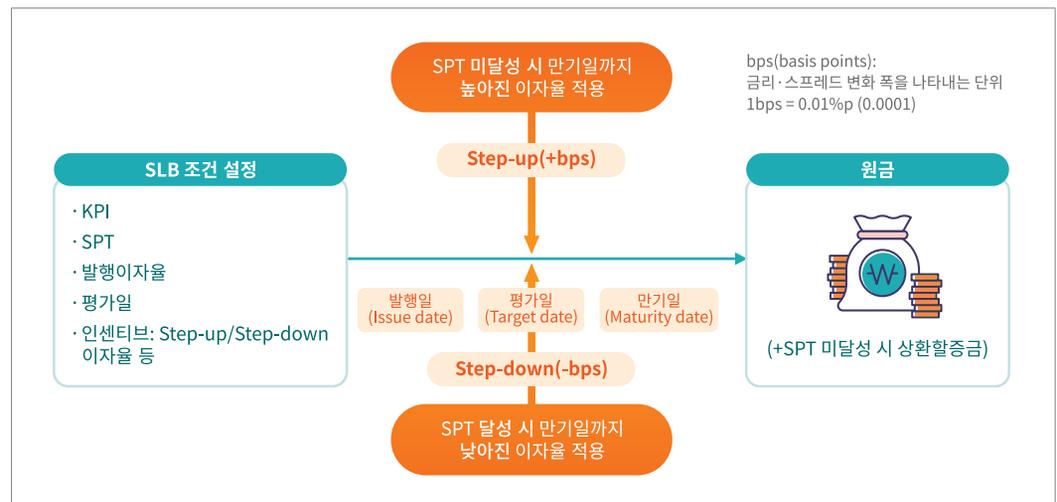
부산은 국내 ESG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2025년 6월 기준 부산 소재 기관의 ESG채권 발행액은 총 141조 원으로 국내 전체 ESG채권 발행량의 약 55.7%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회적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녹색채권(1.1%)과 지속가능 채권(0.1%)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부산 ESG금융시장이 양적 기반은 갖추었으나, 환경(E)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추가적 동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03

SLB의 특징과 국내의 사례

SLB는 기존 ESG채권과 달리 발행기관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가 채권의 금리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동형 금융상품이다. KPI는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등)이며, 지속가능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이하 SPT)는 이에 대해 발행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도전적인 정량적 목표 수준이다. 발행기관은 SPT 미달성 시 투자자에게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그림 SLB의 기본적 구조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2023)

해외에서는 2022년 이후 칠레, 우루과이, 태국, 슬로베니아 등에서 국가 주도의 SLB 발행이 본격화되며 공공부문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칠레는 2022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SLB를 발행(20억 달러)해 4배 초과 청약을 기록하였다.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한국거래소를 통해 SLB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 현대캐피탈, 2024년 한국남동발전이 이어 2025년에는 한국서부발전이 추가로 발행하면서 현재까지 총 세 건의 발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2024년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9조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할 계획이다. 이 감축 목표를 SLB의 KPI와 SPT에 연계해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SLB 발행 역할 구조도(안)



부산시는 ①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 ② 지역 ESG금융 생태계의 균형적 성장, ③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제고 측면에서 SLB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SLB 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실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산하 공공기관의 SLB 발행을 유도하여 부산시 공공부문 전반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사회적채권(S)에 편중된 구조를 환경(E) 부문까지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LB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GGFI는 금융중심지의 녹색금융 역량을 평가하는 지수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와도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GGFI 보고서는 현 인플레이션·금리 환경에서 SLB가 전통적 채권 대비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부산이 SLB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금융도시'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국제 네트워크 및 투자 유치에서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한다. SLB는 목표 설정과 외부 검증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직 관련 부문 간 지속적이고 일치된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 변동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은 ESG 역량과 정책 의지, 풍부한 공공기관 인프라 등 이를 시도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산시의 SLB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는 부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LB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SLB 발행 주관사와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발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금융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라기보다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산이 탄소중립 목표를 채권과 연계해 발행한다면, 이는 시민과 투자자,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약속이 될 뿐 아니라, 국내 다른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부산은 이미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량을 축적해왔다. 이제 그 역량을 실행으로 옮길 차례이다.



코스콤
대표이사 윤창현

금융이 기술을 만나는 곳, 코스콤 대한민국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책임지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전산화가 걸음마 단계에 머물던 시기, 증권 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핵심 전산 업무를 개발·수탁·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첨단 IT 기술을 자본시장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윤창현 대표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024년 9월부터 코스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자본시장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스콤의 혁신 과제를 이끌고 있다.



금융이 기술을 만나는 곳, 코스콤

대한민국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책임지다!

사업영역

코스콤은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며, 금융투자회사를 위한 인프라 및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SCOM 주요 업무

 <p>자본시장 IT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 시장 시스템 개발 및 운용 ·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용 ·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 운용 · 자본시장 IT 인프라 해외 수출 · 금융투자협회 장외주식 시스템 개발 및 운용
 <p>금융투자회사 IT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BASE · 모바일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 솔루션
 <p>IT 인프라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서비스
 <p>금융데이터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정보 서비스 · CHECK Expe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데이터 · 마이데이터 중계
 <p>금융IT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서비스 · 인증 서비스 ·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 R&D · 핀테크 지원 사업



01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적 IT 서비스를 운영함

코스콤은 한국거래소 전 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초당 수백만 건의 주문·호가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2 금융투자회사의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함

계좌 관리, 주식·선물의 매매·정산 등 금융투자회사의 핵심 전산을 통합 지원하며, 모바일 트레이딩·비대면 계좌개설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함

증권·파생상품 시장과 금융투자회사가 공동 활용하는 증권전용망과 금융 특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안정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금융데이터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함

실시간 거래·시세·지수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금융기관·정보사업자·투자자에게 제공하며, 정확한 금융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5 디지털 전환과 금융 산업 혁신을 지원함

클라우드·인증·로보어드바이저·토큰증권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6 소통과 상생의 문화 정착을 지원함

금융사·핀테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션	IT 서비스를 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성장 기업			
비전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Digital Innovator			
핵심가치	고객지향	도전정신	최고지향	공유상생
경영방침	지속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경영전략	 자본시장 IT 인프라 경쟁력 강화	 고객가치 중심 금융IT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사업 추진	 내부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IT 서비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모든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주요서비스

01

한국거래소
시장 시스템
개발 및 운용

02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용

03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 운용

04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 운용

05

금융투자협회
장외 주식
시스템 개발 및 운용

자본시장 IT 인프라 해외 수출

말레이시아, 태국,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자본시장 IT 인프라 수출



금융투자회사 IT 서비스



금융투자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와 유관기관 등
자본시장 참여자의 핵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

주요서비스

01

PowerBASE

계좌 관리, 주식·선물·금융상품 매매, 입출금·회계 등 금융투자회사의 전반적인 IT 업무를 지원하는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

02

금융투자솔루션

국내외 기관, 외국계 증권사, 전문 투자자 대상 특화 솔루션

STP-HUB

금융 거래 실시간 중계 허브 시스템
금융기관 간 거래 효율성·신뢰성 강화

KOSMOS

외국계 증권사 특화 시스템
해외 DMA 주문, 글로벌 결제와 청산 기능 제공

K-FRONT

전문 트레이더를 위해 최적화된 고성능 주문 집행 솔루션



IT 인프라 서비스



자본시장 안정 운영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IT 인프라 제공

주요서비스

01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

현물·파생시장 주문·체결·시세를 실시간 연동하고, 증권·선물사 및 주요 기관을 연결하는 자본시장 전용 초고속 통신망

02

데이터센터 서비스

금융 특화 데이터센터(여의도·안양·부산) 운영 국내외 기관의 메인·DR 시스템 지원



금융데이터 서비스



자본시장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며, 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

주요서비스

01

시세정보 서비스

주식·채권·파생 등 장내·장의 시장의 체결·호가·지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02

마이데이터 중계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서 관리, 표준 API 제공 등을 지원하며, 마이데이터 의무기관과 중계기관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서비스를 제공



금융IT 서비스



클라우드, 토큰증권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혁신 금융IT 서비스를 제공

주요서비스

01

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솔루션 제공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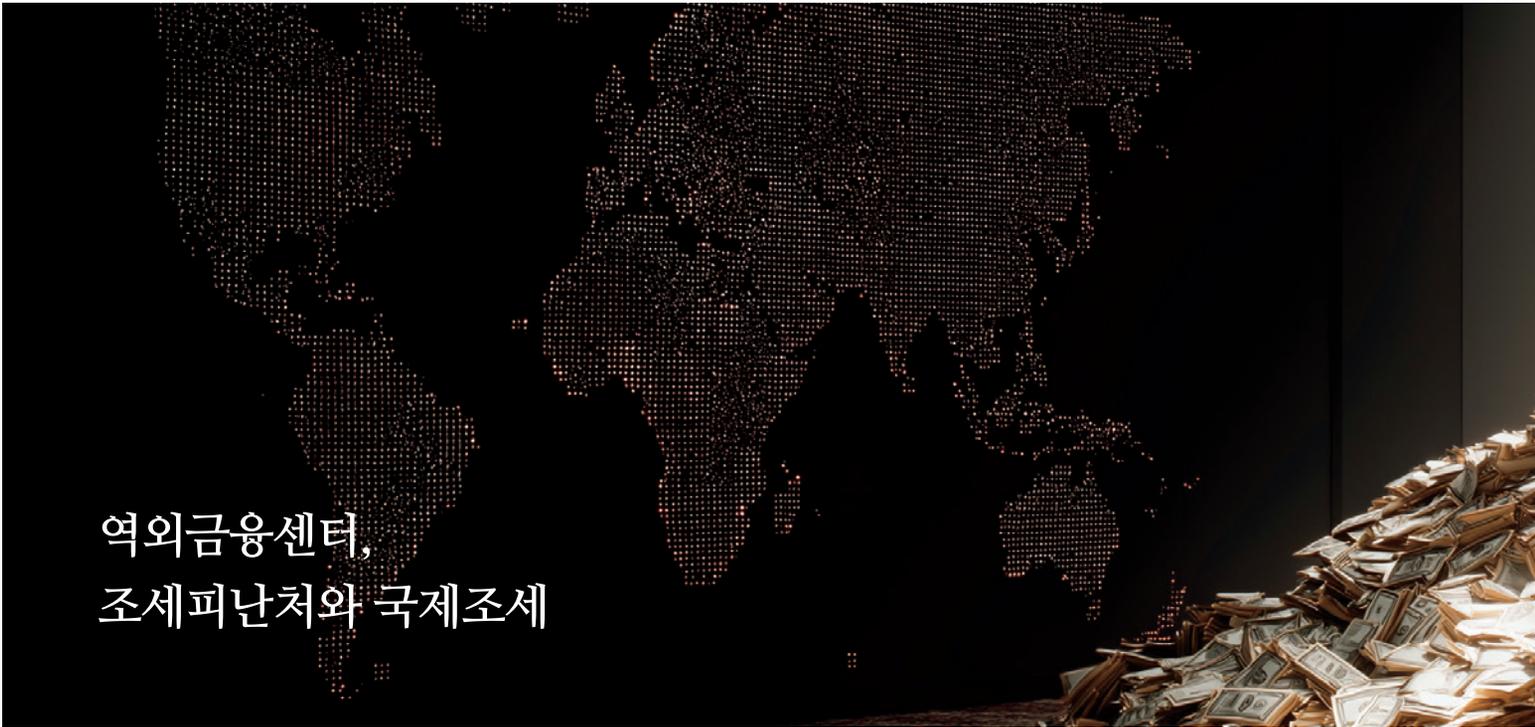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서비스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IT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참여사 공동 활용 플랫폼 제공

03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AI·알고리즘 기반 자문·일임 서비스 검증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의 테스트와 성능 평가 환경 제공



역외금융센터, 조세피난처와 국제조세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 **김정홍**

김정홍 박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대법원 조세
조 재판연구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등에
서 국제조세분야 경력을 쌓았으며, 2021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세법, 조세조약, 이
전가격 이슈 등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OFC)=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이하 ‘OFC’)와 조세피난처
(Tax Haven)는 국제금융과 국제조세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용어
이다. 두 용어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비슷하지만 다른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OFC와 조세피난처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 OFC는 i) 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ii) 특혜적
규제 환경에서 iii) 저세(低稅) 또는 무세(無稅) 제도를 두고 해당 관할
권의 경제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¹

한편, 조세피난처는²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지역이나
국가’로 정의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8년 유해조세제도
(Harmful Tax Practices) 작업을 시작하면서 i) 저세 또는 무세, ii)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효적 정보교환의 미비, iii) 투명성 결여, iv) 실제적
활동의 결여(이른바 ‘Booking Center’)를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OFC와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회사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역외지주회사(Offshore Holding Company)로,³ 이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 외에도 OFC/조세피난처는 종속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Company),⁴ 인력외주회사(Employ Leasing Company),⁵ 국제 해운/항공 회사,⁶ 역외무역회사(Offshore Trading Company),⁷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Company),⁸ 사용료 우회 회사(Royalty Routing Company)⁹ 등과 같은 역외 중개기업(Offshore Intermediary Entity)을 설립하는 데 활용된다.

정리하자면, OFC는 비거주자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과 함께 조세피난처의 특성도 갖고 있으므로 현실 세계에서 OFC와 조세피난처는 대체로 겹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OFC와 조세피난처를 사실상 같은 뜻으로 전제하고 BEPS 중심의 현재 국제조세 체제에서 OFC/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BEPS 전후 OFC/조세피난처 규제 동향

① 여러 폭로(Leaks) 사건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탈세는 200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가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스위스 UBS 은행의 탈세 내부고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위스 UBS 은행의 미국인 직원이 미국 고객들의 계좌를 미국 정부로 넘기고 이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탈세조사로 이어졌다. 결국 스위스가 미국 정부에 굴복함에 따라 UBS는 미국 고객 4,500여 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하며 약 8,8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였고,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도 종말을 고하였다.

그 이후로도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¹⁰ 조세피난처를 통한 고액 자산가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공개(Leaks)로 BEPS를 국제정치 이슈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예를 들면, 2014년 11월 Lux Leaks에서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2002-2010년 간 340여 개 기업에 대한 조세 예규를 통해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여,¹¹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Panama Papers,¹² Paradise Papers,¹³ Pandora Papers¹⁴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② 유해조세제도포럼(Harmful Tax Practices Forum)

앞서 언급하였듯이 OECD는 1990년대 말부터 OFC를 비롯한 조세피난처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¹⁵의 근본

- 2007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07년 나온 IMF의 실무보고서(Ahmed Zoromé 저)에 나오는 용어 설명이다.
-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는 더 이상 OECD에서 통용되지 않고, 요즘은 ‘저세를 관할권’(low tax jurisdictions)이 많이 쓰이지만,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조세피난처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 다양한 국가들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싱가포르, 유럽은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역외지주회사 설립국가들이다.
- 다국적기업 그룹 회사들의 사업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대표적으로 버뮤다, 케이만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다.
- 고객회사의 사업지원이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외주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인도, 필리핀을 들 수 있으며 여러 대륙별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다.
- 국제 해운업은 잘 알려진 대로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를 둔 국가에 해운사들의 선박등록을 통해 선박관련 규제 완화,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이 있다. 국제 항공업 역시, 항공기 등록 및 리스 관련 각종 규제 및 조세 감면의 편의를 제공하는 버뮤다, 케이만, 바하마, 아일랜드 등이 있고 이들 관할권은 항공기 금융, 보험까지 포함된 일관(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들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몰타와 인도도 항공기 리스 관련 특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관계기업 또는 제3자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역외 판매수익에 대한 저세를 과세(또는 무세) 국가에 설립된다. 대표적으로 모리셔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지브롤더, 맨섬 등이 있다.
- 현지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아 현금 관리, 그룹 자금 조달, 자회사에 대한 대여 및 기타 금융 위험 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외국 고객에게 예금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이자 원천세가 주로 면제된다. 과거 예금주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은행비밀주의가 있었으나 이는 BEPS 기획 이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케이만,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 지적재산(IP)을 보유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사용하여(license)하여 사용료를 받고 해당 소득에 대해 저세를 또는 무세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몰타 등이 있고 이들은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의 혜택을 통해 IP 보유기업의 설립을 유지한다.
- 대표적으로 Tax Justice Network, ICIJ(International Coali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BEPS Monitoring Group 등이 있다.
- PwC 회계법인의 직원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28,000쪽 분량에 달한다.
- 2016년 4월 폭로된 파나마 소재 로펌 Mossack Fonseca의 비밀문서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21만 4천여 개의 역외회사에 대한 정보 및 유력 정치인, 유명인 등 전 세계의 부유층이 어떻게 세무조사를 피해서 재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11월 발표된 버뮤다 소재 로펌 Appleby의 내부 자료로, 세계 유력인사들의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이 폭로되었다.
- 2021년 3월 폭로된 것으로, 35명의 세계 정치지도자 및 다수의 억만장자들의 비밀계좌 및 14개 금융회사들의 내부자료가 공개되었다.
- 국제 무역과 투자 및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국가의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조세경쟁을 말한다. 이에 관한 OECD의 1998년 보고서가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이다.

원인으로 보아 규제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 작업은 2000년대 초 미국 부시(Bush) 행정부의 반대로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 논의로 축소되었다가,¹⁶ 2010년대 중반에 BEPS 기획이 본격화 되면서 논의의 방향이 바뀌었다. 즉,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논의는 BEPS ‘Action(과제) 5’에서 ‘투명성’(Transparency)과 ‘실질 활동’(Substantial Activities) 요건의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재편되어 매년 약 150개 OECD와 비OECD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동료 점검’(Peer Review)을 통해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

먼저 투명성 측면에서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5개 유형의 조세 예규¹⁷를 지정하고 이를 발급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자발적 정보 교환 의무를 부여한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누적 기준 26,000개 이상의 조세 예규에 대해 58,000건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실질 활동 요건은 특허 조세제도이든 비과세(또는 저율 과세) 지역이든 일정한 실질활동 요건을 충족할 의무를 해당 국가 또는 ‘관할권’(Jurisdiction)에 부여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IP) 소득’과¹⁸ ‘비(非) IP¹⁹ 활동 소득’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되고 이행을 점검한다.²⁰

③ 투명성과 정보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교환은 과세당국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는 것으로, G20가 금융위기 이후 은행비밀주의의 종식을 선언한 2009년부터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라는 국제기구급 협의체로 발전하였다. 이 포럼은 조세피난처를 비롯하여 현재 170여 개국이 참여하는 동료점검을 통해 개별 국가의 정보교환 제도와 실무를 감시한다.

정보교환 방식은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하거나(on request), 자동(automatic)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요청에 의한 교환은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실행되며, 성격상 개별 과세 건에 대해 상대국에 정보교환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받은 과세당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요청국에 전달하게 된다. 자동교환(AEOI)의 경우 조세정보교환과 징수협조 등 조세행정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모(母)조약



66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와 BEPS 규제로 인해
OFC/조세피난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조세회피를 위한 무풍지대가 아니며,
QDMTT 도입 등 변화된 국제조세 체제에 적응하며
새로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9

16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당시 OECD의 조세피난처 판단 기준(저율과세 또는 무세 및 실질적 사업활동 부재)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자금 규제와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면서 정보교환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17 (i)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허 제도과 관련된 예규, (ii) 이전가격에 대한 일방 이전가격 사전약정(APA) 또는 기타 국경 간 일방적 예규, (iii) 과세 이익의 하향 조정을 규정하는 예규, (iv) 고정사업장 예규 및 (v) 특수관계자 도관(導管) 거래 예규.

18 지식재산권(IP) 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IP 특허 제도(예: Patent Box 제도)에 IP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IP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연계시키는 ‘연계 접근법’(nexus approach)이 적용된다.

19 비(非) IP 소득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 역시 그 핵심적 소득 창출 활동이 해당 제도의 관할권 안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격 있는 상근(常勤) 직원, 충분한 운영 비용 및 이를 검증할 투명한 이행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20 2024년 7월 현재 ‘포괄적 이행 체계’ 참여국들의 유해 조세제도 ‘동료 점검’ 현황은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harmful-tax-practices/harmful-tax-practices-consolidated-peer-review-results-on-preferential-regimes.pdf> 참조.

21 연결매출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한 보고서로 최종모회사가 그 소재지국에 제출한다.

22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23 미국은 2010년 자국의 독자 입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의 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다수 국가가 반발함에 따라, 미국과 상대국 간 양자이행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체결하여 상호주의하에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2023년에는 1억 3,400만 개 이상의 금융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었으며, 이는 금액기준으로 약 12조 유로에 달하는 금융자산이다.



으로 하여 국가별보고서(CbCR)²¹의 자동교환 및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시행 약정²²이 각각 체결되어 있고, 다자적 틀 안에서 과세당국 간 양자 정보교환이 실행된다.²³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외국 거주자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취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²⁴ 2026년 도입되는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역시 2027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정보교환은 조세분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예방과 함께 교환된 정보는 세무조사에 활용되어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교환 제도의 활성화로 2017년~2024년 간 OFC에 대한 금융투자 규모가 20%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BEPS 기획은 15개 중 마지막 작업으로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2018년부터 ‘필라(Pillar) 1, 2’라는 두 개의 축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필라 1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을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에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하고, 필라 2는 저세율국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물리도록 한다. 현재 필라 1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필라 2는 2021년 말 OECD에서 합의된 이후 OECD, EU 회원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행 입법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금년도 출범한 2기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이견 제시로 기존 제도의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조세피난처가 어떻게 필라 2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다.

필라 2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는데, 세 개의 원칙, 즉, i)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iii)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로 구성된다. IIR은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자회사)이 소재한 국가에서 해당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을 모회사 소재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UTPR은 IIR 과세권이 발생한 국가(모회사 소재국)에서 필라 2 미도입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다른 구성기업 소재국에서 보충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QDMTT는 저세율 국가 입장에서 자국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이 상위 모기업이나 다른 구성기업에 의해 IIR이나 UTPR로 과세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국 내 구성기업에 대해 15%의 최저한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이 삼성전자의 현지법인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10%의 실효세율로 과세한다면, 나머지 5%의 추가 과세권은 한국에서 IIR로 과세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베트남이 QDMTT로 스스로 추가세액(5%)을 과세하면 된다.

필라 2의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상당수의 조세피난처 내지 저세율국은 QDMTT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하마, 바베이도스, 지브롤터, 모리셔스, 사이프러스, 홍콩, 싱가포르, 건지, 맨섬, 스위스 등이다.

OFC/조세피난처: 어디로 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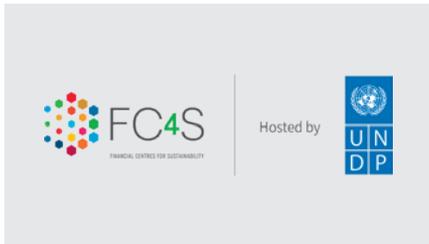
위에서 OFC/조세피난처가 국제조세 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낳았고 국제적인 BEPS 개혁 체제하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그러면 이제 OFC/조세피난처의 시대는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답은 후자에 가까운데, 이들 국가/관할권들이 변화된 국제조세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조세 이외에 편리한 거주, 금융 및 법률 서비스 인프라, 경제적 안정성,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유인책으로 다국적기업과 고액자산가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OFC/조세피난처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GFCI 25위 기록



- 2025년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120개 나라 중 25위(아시아권 10위)
- 역대 최고 점수인 734점 기록

UNDP FC4S*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 UNDP(유엔개발계획) 산하 지속가능금융 국제협의체인 FC4S(Financial Centres for Sustainability)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선정

* FC4S: 국제연합(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목표로 2018년 유엔개발회의의 지속가능금융허브 내에 설립된 금융중심지 글로벌 네트워크

APAF* 국제학술대회 발제



- 일시 2025.7.16.
- 장소 BIFC 62층
- 참석자 안순구 금융연구2실장
- 주제 역외금융의 중요성과 부산의 전망
(Toward a Global Financial Center: The Importance of Offshore Financing and Prospects for Busan)

*APAF 국제학술대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Fin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 전문가 및 학계가 모여 금융공학 및 금융혁신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올해 행사는 7/15-7/17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되었음

금융인재 육성, BEFF+ 부산금융중심지 오픈캠퍼스



- 기간 2025.7.1.~7.29.
- 내용 부울경 지역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실무 교육
- 참여기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해양금융융합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투자협회 등 AI 레벨업 교육 in BIFC
- 교육대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대학교 재학·휴학·졸업 학생 80명 내외

부산국제금융센터와 함께하는 BFC 음악회 개최



- 일시** 2025.11.6.~2026.1.27. (특별공연 4회 - 4.1. 10.17., 12.22., 12.24.)
- 장소** BIFC 1층 로비
- 목적**
 - 예술과 금융의 상호작용을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부산 문헌 금융단지 브랜드가치 제고
 - 금융중심지 방문객 및 입주기관 종사자들의 문화생활 지원
- 연주** 부산시립예술단(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등)

제12회 글로벌금융포럼 개최



- 일시** 2025.10.28.
- 장소**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
- 주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금융·해양금융 선도하라
- 내용**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개막식 축사
마이클 마이넬리 전 런던금융특구 시장 기조연설
부산 디지털금융·해양금융 육성 전략 관련 강연·발표·대담 등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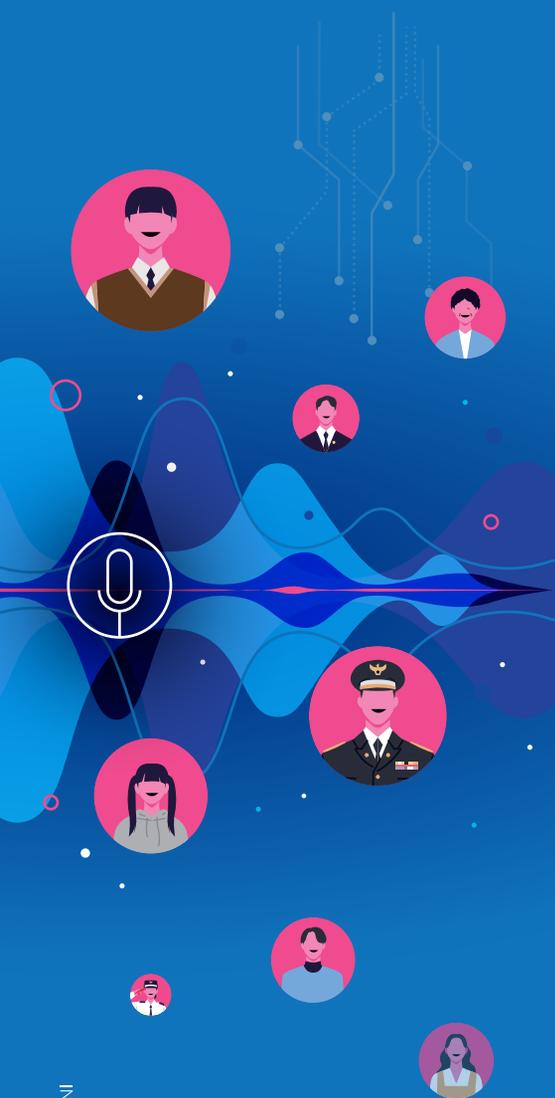
- 일시** 2025.8.5.
- 장소** BIFC63층 D-Space
- 목적** 해양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강화 업무협약 체결
- 주요 내용** 해양금융산업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공유, 공동 조사·연구,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부산국제금융진흥원-주한영국상공회의소 리더십 네트워크 행사 공동 주최



- 일시** 2025.10.28.
- 장소**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 주제** Inspiring Growth and Empowering Women
- 주요 참석자**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Lucinda Walker 대표, Laura Mcluckie 부산대표, Paul Edwards Busan Chapter Lead, Michael Mainelli Z/Yen Group 회장, 김주현 대표(Artel), Valerie Won Lee(Korea Chapter Lead, WomenTech Network)
- 주요 논의내용**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다양성, 여성 리더십, 거버넌스 등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능화된 범죄에 속수무책, '구조적 한계' 직면한 기존 대응 체계

올 한해 상당한 논란이 된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례는 해외 범죄조직이 어떻게 국내 금융시스템과 해외 계좌를 치밀하게 연계하여 피해금을 신속하게 국외로 도피시켰는지, 기존 국내 금융시스템의 범죄 대응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하였다.

그간 활용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경찰 수사나 개별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에서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해외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된 정보조차 신속하게 업종 전체에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인프라는 부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대포통장·연계계좌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이 해외 계좌로 이체되면「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에 기반한다는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망 역시 전화·팩스 등 비전산 방식에 의존하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결국, 기존의 방식으로는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신속성을 요구하는 대응력의 부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에 개별 금융회사 및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골든타임’ 내에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에 깊이 통감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기관 전반에 산재하여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통합·전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 및 AI 분석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개요

2025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 부처·기관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신협 등 업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빅테크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ASAP)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이다.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참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기반 패턴 분석을 통하여 범죄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설계된 공동 플랫폼이다.

플랫폼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약 130개로 총 9개 유형·90개 항목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관련된 정보를 ASAP를 통해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ASAP의 주요 내용 및 운영 방식

① 총 9개 유형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 및 항목

ASAP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계좌 정보(18개 항목)
-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15개 항목)
-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해외 계좌 정보(8개 항목)
- 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기타 정보(12개 항목)
-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8개 항목)
-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 추정 정보(4개 항목)
- 피싱사이트 탐지 관련 정보(5개 항목)
- 악성 앱 탐지 정보(6개 항목)

이 가운데 실제 범죄에 활용된 계좌 및 해외 계좌 정보는 선제적·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ASAP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예를 들어, 해외 범죄조직이 이용한 국내 계좌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계좌 정보가 곧바로 전 금융회사에 전파된다. 이후 동일 계좌로 이체되는 거래를 차단하여 국내 피해금의 해외 도피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한편, 의심 계좌 및 연계 계좌 정보는 AI 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축적하여, 최신 범죄 수법을 반영한 탐지모형 개발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② AI 기반 탐지모형 및 활용 방식

금융보안원은 ASAP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AI 기반 위험지표 산출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금융회사는 해당 모델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직접 구동 방식

ASAP에서 개발한 공동모형을 금융회사가 전달받아 자체 AI 인프라에 반영하여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다. 주로,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대형 금융회사에 적합한 방식이다.

- API 호출 방식

금융보안원의 AI 인프라에서 공동모형을 구동하고,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 정보를 ASAP에 송신하면, 모델이 산출한 위험도(예: 상·중·하)를 회신하여, 각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탐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자체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의심거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회사에 유리하다.

AI 분석 결과와 위험도 평가는 정보 축적 및 모형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 기관에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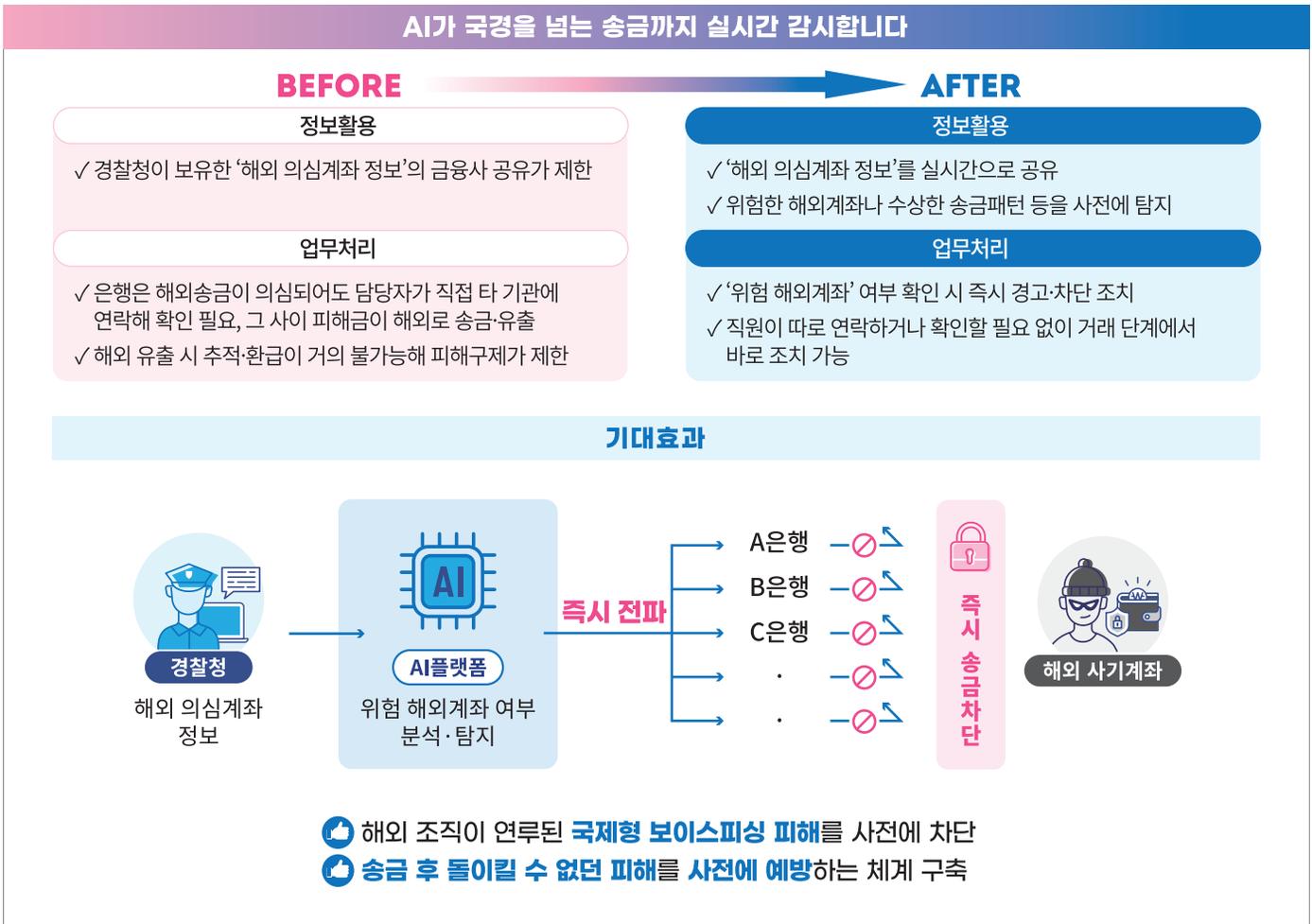
ASAP 가동은 기존의 개별 금융회사 중심 대응 구조에서 전 금융권·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확대·전환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과거에는 해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업권 전체에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피해금이 해외 계좌로 이체된 이후에는 지급정지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금년 10.29일부터는 ASAP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해당 계좌로 송금되는 자금이 사전에 차단되어 해외 범죄조직으로의 피해금 도피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한다.(그림 1)

그림 1 국제 사기행각 적시 대응



2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 제고

그간 범죄조직은 여러 금융회사에 다수의 대표통장을 개설하고, 기관 간 정보의 분절을 악용하여 자금 도피 경로를 복잡하게 설계하였다. 개별 금융회사는 자사 내 의심 계좌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에 연계된 계좌망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ASAP를 통하여 전 금융권의 의심 계좌·연계 계좌 정보가 집적·공유되어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이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자금 동결·환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2)

3 AI 기반 최신 범죄 수법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수법은 시나리오 고도화, 심리적 지배, 딥페이크, 악성 앱 등 기술집약적 형태로 진화하였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가 가진 제한된 자체 데이터만으로 탐지모형을 개발할 때에는 최신 수법 반영이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ASAP를 통하여 전 참여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하게 되면 대형 금융회사는 자체 인프라에서 고도화된 모델을 직접 운용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제2금융권 등은 API 방식을 통하여 유사한 수준의 탐지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개별 금융회사별 대응 체계로부터 공동 학습·공동 방어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림 3)

4 신속한 정보교환 및 골든타임 확보

그간은 다수의 금융회사에 분산 개설된 계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전화·팩스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제는 ASAP를 통하여 피해·의심 계좌 정보가 전산 시스템상에서 실시간 공유된다. 이로써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지급정지, 추가 유출 차단, 환수 절차 착수 등이 더욱 기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기대된다. (그림 4)

그림 2 조직적인 사기범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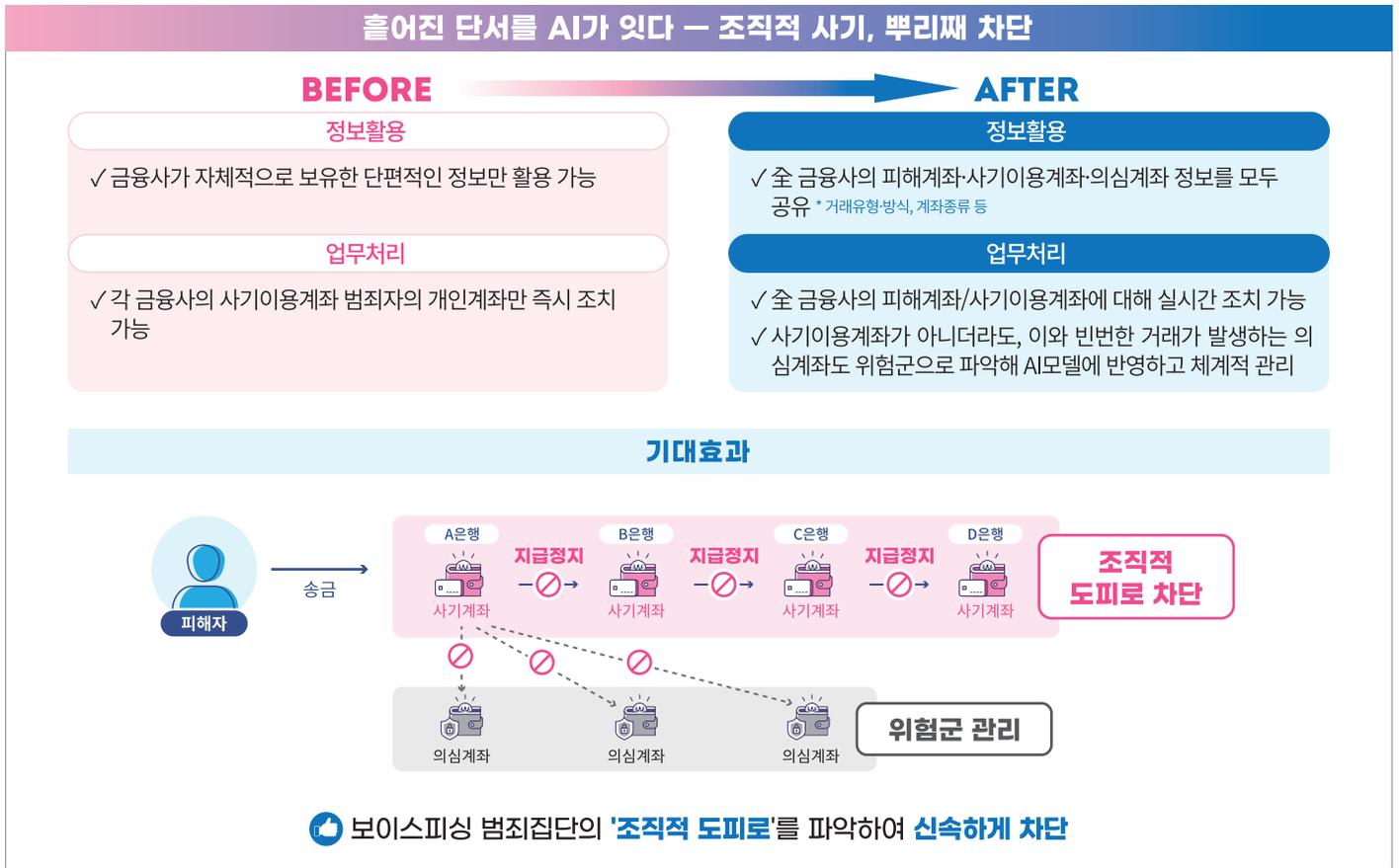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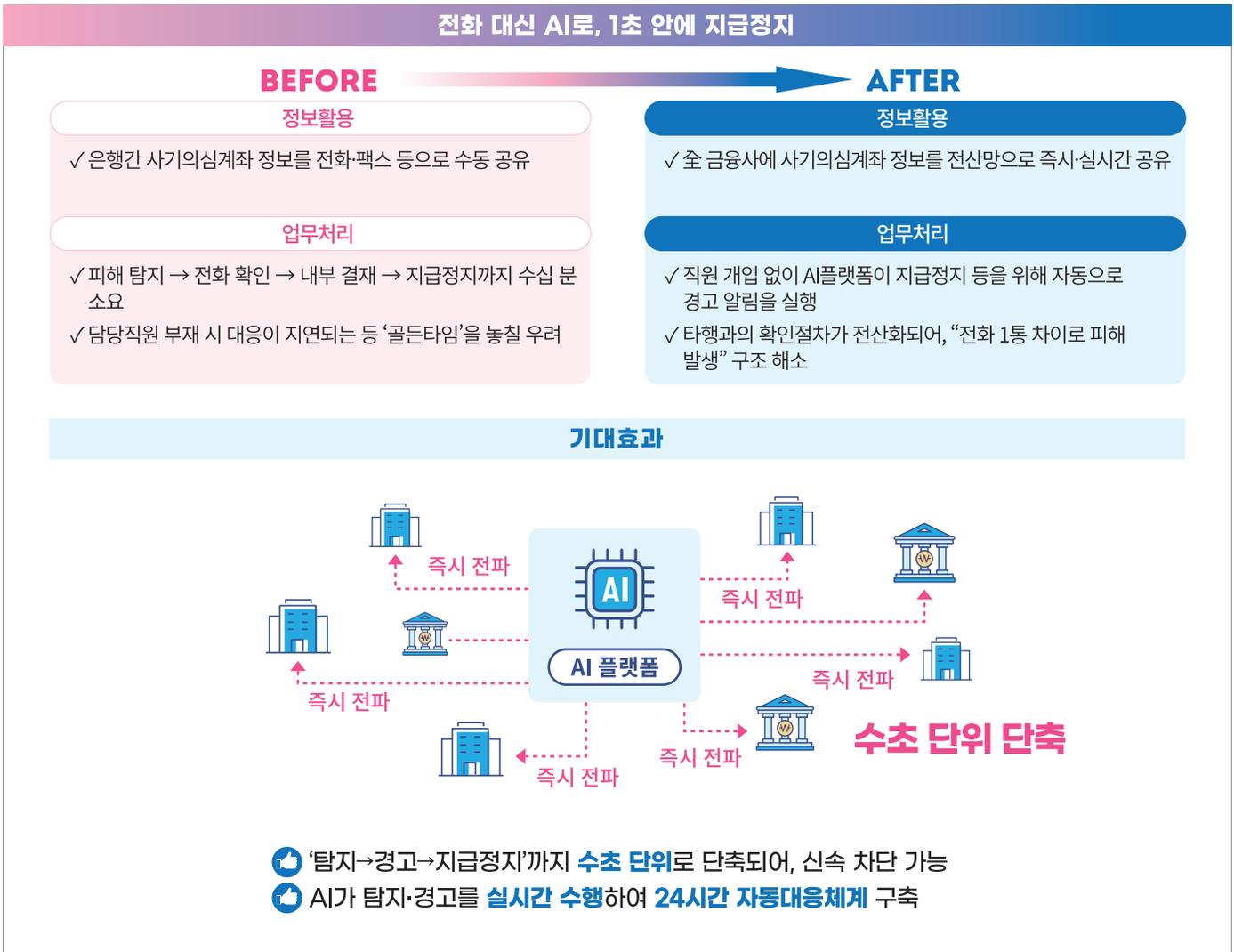


그림 3 AI 기반 효과적 범죄 탐지



그림 4 은행간 전산화·자동화된 정보교류 가능



5 전 부처·기관 간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탈취, 통신망 기망, 금융계좌 탈취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범죄로써, 금융·수사·통신 부문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ASAP는 은행·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5)

향후 법제도 정비 방향

ASAP 출범 이후 관계기관 간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 및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이 논의되었다.

1 정보공유 법적 근거 강화 및 피해구제 확대

수사·통신 부문 의심 정보를 ASAP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가상자산 피해를 포함한 폭넓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과 관련하여, 소비자 구제 실효성과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였다.

3 금융보안 체계 전반의 강화

전 금융권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수 점검을 신속히

그림 5 수사정보·통신정보 등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

보이지 않던 흔적까지, AI가 찾아냅니다

BEFORE

정보활용

- ✓ 금융사는 자체 내부 거래정보만 활용 가능
- ✓ 단말기 해킹·위조신분증·다회선 개통 등 비금융 정보는 경찰청, 통신사 등이 각각 관리해 정보 전달 누락·시차 발생

업무처리

- ✓ 금융사에 관련 정보가 없어 탐지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금융사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만 지급정지 가능
- ✓ 은행·통신사·경찰청 간 협조·대응 지연

AFTER

정보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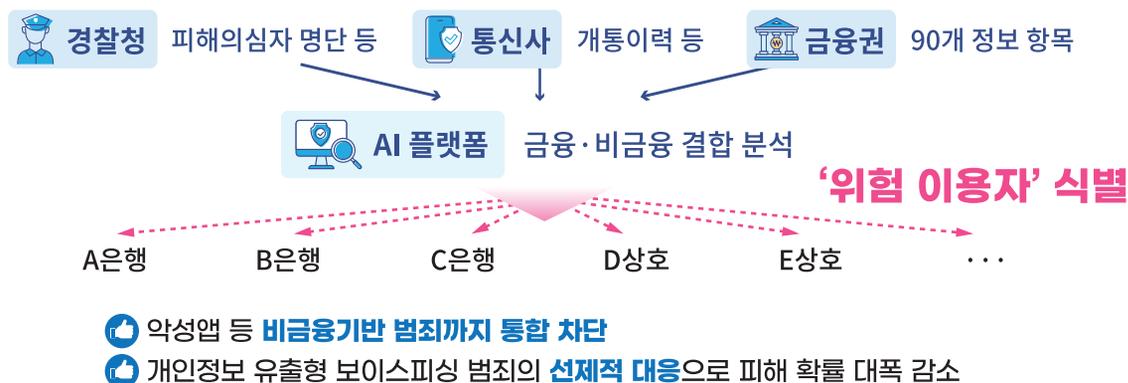
- ✓ 경찰청의 피해의심자 명단, 통신사의 개통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까지 AI플랫폼에 집중
- ✓ AI가 금융거래정보에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 분석해 사기 시도 전 사전 탐지

* 개인정보 유출, 신규 개통 단말, 다회선 사용 패턴 등

업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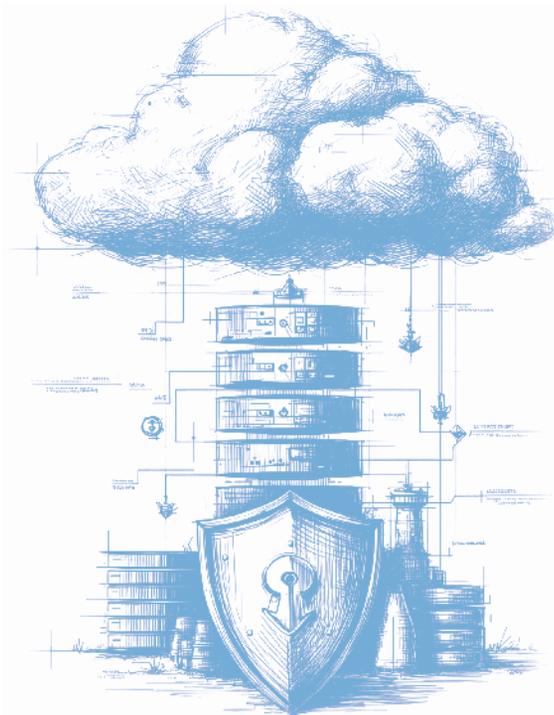
- ✓ AI플랫폼이 자동으로 '위험 이용자'를 표시하고, 금융사는 해당 계좌에서 거래 시도 시 본인확인 강화·입시정지 등 조치
-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부처·기관 간 협조 상시화

기대효과



마무리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조직적 범죄로 진화한 현실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의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뢰받는 국제금융센터의 조건: 저지(Jersey)의 경험



Jersey Finance

CEO Joe Moynihan

조 모이니한 CEO는 40년에 걸친 금융서비스 경력을 보유한 국제금융 전문가이다. 글로벌 은행 AIB(Allied Irish Bank)의 저지-맨섬 법인 CEO를 역임하며 신탁과 투자 비즈니스를 총괄했다.

이후 저지 정부 금융서비스국장(Director of Financial Services)으로서 업계와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저지가 선도적인 국제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2019년 2월부터는 Jersey Finance의 CEO를 맡아 글로벌 홍보와 대외전략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세계국제금융센터연합(WAIFC) 이사로도 활동하며 국제 금융도시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Q.1 저지 파이낸스(Jersey Finance)를 간략히 소개하고 해당 기관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저지(Jersey)를 위해 하는 역할을 알려주세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되는 저지 파이낸스는 저지를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국제금융센터(IFC)로 대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 파이낸스는 업계 대표 기관으로, 정부 및 규제기관과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저지의 IFC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정평이 나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세 투명성에 관한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저지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관할지역으로, 최근 유럽의회 자금세탁 감독기관인 머니발(MONEYVAL) 평가의 40개 권고사항 중 3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또는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기술적 준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관할지역만 달성하고 있는 성과입니다.

Q.2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저지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두바이와 같은 금융특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지는 영국의 자치권 보유 왕실령으로서, EU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지는 입법·규제·조세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Q.3 저지가 국제금융센터로서 발전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별도의 거버넌스나 제도적 체계가 존재합니까?

저지 정부는 금융서비스 정책 프레임워크(Financial Services Policy Framework)기반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며, 금융업계 및 규제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지의 성숙한 금융서비스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바탕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저지의 선도적인 IFC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고도화된 전문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특히 대외관계 담당 장관(Minister for External Relations)이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총괄하고, 재무·자원 담당 장관(Minister for Treasury and Resources)이 해당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Q.4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와 신용을 구축하는 데 저지의 영미법 전통이 기여한 바는 무엇입니까?

저지의 법적 안정성은 오랜 역사와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일례로 저지의 신탁법은 안정성과 수준이 높아 전 세계 다수 관할지역에서 모범 사례로 채택될 정도이며, 자선사업이나 사회적책임적 자산관리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지의 경험이 풍부한 독립적인 사법부와 견고한 판례 체계는 신뢰와 신용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66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은
제도보다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글로벌 금융허브와 전략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9

Q.5 저지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핵심 강점은 무엇입니까?

IFC로서 저지의 강점은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안정성, 독립적인 사법제도, 다방면으로 고도화된 전문성, 금융업계에서 60년 이상 축적된 경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Q.6 현재 저지 파이낸스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국제적 연계성이 높은 금융상품 또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저지가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은 은행업, 기업 서비스, 펀드, 투자관리 및 개인 자산관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금융 생태계를 회계, 법률, 보험, 기술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저지는 전 세계 전문 투자자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혁신적 대체 펀드 관할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일련의 저지 사모펀드 (JPF, Jersey Private Fund) 제도 개선안을 발표¹하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저지의 상품이 글로벌 투자자, 운용사, 펀드 기획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동시에 엄격한 감독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¹ 개선안 관련 세부 정보는 저지 파이낸스 웹사이트 참조(Jersey Finance Welcomes Enhancements to Jersey Private Fund Regime | News | Jersey Finance)

Q.7 별도의 거버넌스 기구, 금융 분야에서의 영미법 전통 등 독특한 구조를 갖춘, 이른바 ‘두바이식 모델’이 국제금융센터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다른 국제금융센터(IFC)가 채택한 구체적 모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각 관할지역이 각자 전략적 목표, 법적 전통, 경제적 우선순위에 가장 적합한 제도적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Q.8 부산이 국제금융센터로서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고, 기존 금융허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산이 선도적 국제 금융센터(IFC)로서의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명성을 갖춘 기존 금융센터와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관할 지역 간 모범 사례와 전문성, 혁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규제·조세·투명성 기준을 꾸준히 준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수성, 건전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부산은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며,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록 INFO

- 부산 일반 현황
-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BIFC 입주기관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 금융중심지 및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안내

부록

부산 일반 현황

	단위	통계	전국대비 비중(%)
GRDP 규모			
부산	십억 원	114,165	4.7
부산·울산·경남	십억 원	341,701	14.2
전국	십억 원	2,404,191	100

부산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0.4	1.2
광업·제조업	%	17.4	3
건설업	%	5.2	4.3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5.8(6.8)	5.7(5.3)
전기가스증기업	%	1.1	4.4

부산·울산·경남 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1.4	12.8
광업·제조업	%	38.1	19.4
건설업	%	5.2	10.2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3.6(4.6)	11.9(10.4)
전기가스증기업	%	1.6	18.1

컨테이너 처리량

부산	천TEU	23,154	76.8
전국	천TEU	30,147	100

거주환경(부산)

면적	km ²	771.3	0.8
인구	명	3,278,280	6.4
기온	°C	16	
강수량	mm	2,191.4	

외국인관련(부산)

외국인 등록인구	명	49,409	
국제 학교	개	7	
다문화 학교	개	2	
외국인 관광객	명	1,900,63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단위: 개

기관명	2024년 말
합 계	3,221
시중은행	291
우리은행	68
SC제일은행	16
KB국민은행	85
한국씨티은행	3
신한은행	54
KEB하나은행	65
지방은행	336
부산은행	192
제주은행	1
경남은행	143
특수은행	290
IBK기업은행	79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16
NH농협은행	176
SH수협은행	16
외은지점	1
중국공상은행	1
증권	100
교보증권	1
상상인증권	1
유안타증권	5
하나증권	5
IBK투자증권	3
BNK투자증권	3
미래에셋증권	8
메리츠증권	1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
대신증권	5
유진투자증권	2
DB금융투자	4
한국투자증권	8
현대차증권	5
NH투자증권	6
신한투자증권	5
KB증권	11
한화투자증권	6
삼성증권	4
신영증권	3
SK증권	7
하이투자증권	6
부동산신탁	1
우리자산신탁	1
투자자문	2
오리엔트투자자문	1
밸류아이투자자문	1
자산운용	6
해디브자산운용(주)	1
주식회사 단디자산운용	1
이지스자산운용	1
iM투자파트너스	1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으뜸자산운용(주)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
오픈트레이드	1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	1

기관명	2024년 말
생명보험	293
에이비엘생명	11
KB라이프생명	1
삼성생명	96
교보생명보험	87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9
KDB생명보험	10
DB생명	10
메트라이프생명	17
동양생명	15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1
NH농협생명	13
흥국생명보험	11
푸본현대생명	2
손해보험	516
캐롯손해보험	2
한화손해보험	47
현대해상화재보험	80
삼성화재	80
SG서울보증	11
약사손해보험	5
하나손해보험	7
(주)KB손해보험	68
DB손해보험	81
MG손해보험	7
롯데손해보험	15
농협손해보험	7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
메리츠화재	97
신용카드	76
우리카드	1
비씨카드	1
현대카드	3
롯데카드	12
삼성카드	33
KB국민카드	4
하나카드	1
신한카드	21
리스할부금융	68
오릭스캐피탈	1
메리츠캐피탈	2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1
애규온캐피탈	1
롯데캐피탈(주)	4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1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
제이엠캐피탈	1
산은캐피탈	1
현대커머셜	1
KB캐피탈	3
시너지아이비투자(주)	2
현대캐피탈	7
MG캐피탈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3
메르세데스벤츠	2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
NH농협캐피탈	2
한국캐피탈(주)	1

기관명	2024년 말
우리금융캐피탈	6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3
오케이캐피탈	1
BNK캐피탈	9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1
하나캐피탈	1
신기술통용	3
(주)에스비파트너스	1
롯데벤처스(주)	1
농심캐피탈	1
신용정보	56
에프앤유신용정보(주)	1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SGI신용정보	4
세일신용정보(주)	6
코아신용정보	2
신한신용정보	2
새한신용정보(주)	6
고려신용정보(주)	6
미래신용정보	6
에스엠신용정보	4
BNK신용정보	2
에이앤디신용정보	1
오케이신용정보	2
(주)이크레더블	1
KB신용정보	1
케이에스신용정보	3
제이엠신용정보	2
우리신용정보	1
저축은행	38
애규온저축은행	1
솔브레인저축은행	1
웰컴저축은행	1
흥국저축은행	1
DH저축은행	1
우리저축은행	2
동원제일저축은행	3
OSB저축은행	2
대신저축은행	2
(주)IBK저축은행	6
국제저축은행	1
고려저축은행	3
BNK저축은행	3
진주저축은행	6
예가람저축은행	2
조흥저축은행	2
에스앤티저축은행	1
신탁	209
회원농협	770
회원수협	138
산림조합	25

자료: 금융감독원

BIFC 입주기관 현황

2025.9 기준 / 단위: 명

63층 메인빌딩		총인원 3531
63(d-space)	한국시티은행	2
	UIB	1
50~51, 55~62	한국거래소	478
55	IBK창공	20
53	캠코선박운용	15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훈련기관	0
52	신한은행	5
	부산국제금융금융연수원	2
	코스콤	2
	한국금융투자협회	7
	부산국제금융진흥원	23
	대한상사 증재원 & 아태해사 증재센터	2
3, 40~47	한국자산관리공사	632
5, 36~39, 54, 63	한국예탁결제원	342
4, 30~35	한국남부발전	420
7, 12~13, 23~27	한국주택금융공사	651
22	KDB산업은행	23
8~9	부산테크노파크	90
21~22(b-space)	부산블록체인컨벤션	30
21	한국무역보험공사	15
20	한국수출입은행	40
6, 10~11, 19	주택도시보증공사	395
14	신용보증기금	50
9	부산은행	6
	한국증권금융	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
2	우리은행	15
	농협은행	12
	우리은행	15
1	국민은행	8
어린이집	HF 보금자리 어린이집	47
	푸른바다 어린이집	49
	BIFC 어린이집	108

개별 건물	총인원 1462
기술보증기금	392
한국은행 부산본부	75
부산은행 본사	995

BIFC 2단계 D-valley 입주기관	총인원 545	
7~10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 스페이스	138
11~15 (U-space BIFC)	핀테크 기업	281
16~17	삼성중공업 R&D 센터	120
11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6

부록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중심지 '서울' 지정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	12,276㎡	10,292㎡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 지하 7층, 지상 49층 · 36층(U자형 2개동)	147,000㎡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 12월, 입주완료	2018. 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 02 / 2011. 05	2011. 01 / 2013. 06	2011. 12 / 2014. 07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장)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부산광역시(금융블록체인담당관)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금융중심지 조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BIFC)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중·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지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 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2021년 5월, 국제금융네트워크 'FC4S' 정식회원 가입
- 2022년 3월,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착공
- 2024년 6월,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2015년 6월)
- 캠프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2016년 9월)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2013. 5. 5. ~ 7. 파라다이스호텔
 - FIA(국제선물산업협회)컨퍼런스: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총회: 2013. 11. 12. ~ 14. 조선히otel
 -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2015. 3. 26. ~ 29. 벅스코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2018. 5. 21. ~ 25. 벅스코
 - KOAFEC(한-아프리카장관급경제협력회의): 2023. 9. 12.~9. 15. 부산 아난티 힐튼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36) 런칭 심포지엄 개최: 2024.9.24.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또는 소득세: '25. 12. 31일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2항), 취득세: '26. 12. 31.일까지로 연장(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위치: BIFC 3단계 및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 면적: 75만 976㎡(문현 2만 7,266㎡, 북항 72만 3,710㎡)



금융중심지 및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안내

참고 진입방식에 따른 진입유형 분류



* <연락사무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대상 아님
 ** 창업은 법인등기, 신설은 사업자등록 기준

1. 금융중심지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제도

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구분	지원대상	감면대상 및 정도	근거법령
국세	소득·법인세 금융중심지에 창업 신설 * - 금융 및 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최초 3년: 100% 감면 - 이후 2년: 50% 감면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지방 이전 법인 -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양도차익법인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
지방세	법인세 지방 이전 법인 -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둔 법인 - 2028년 12월 31일까지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 개시	최초 5년: 100% 면제 이후 2년: 50%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취득세 (취득자산가 4-8%) 금융중심지에 창업 신설 - 금융 및 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0% 면제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지방세 지방 이전 법인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재산세 (과세표준의 1% 이하) 금융중심지에 창업 신설 - 금융 및 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0% 면제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 남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
	지방세 지방 이전 법인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 최초 5년: 100% 면제 - 이후 3년: 50%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 금융중심지 창업·신설 혜택(조특법 제121조의21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 이내 창업·신설 필요, 이후 신규혜택 적용 불가(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 가능, 서울은 창업·신설 혜택 제외)

2 보조금 지원 제도

보조금 유형	지원대상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금융중심지 신설 이전 - 외국: 3개국 이상 관할 지역본부, 한국 본사 - 국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본사	용지·건물 구입비(또는 임차료): 50% 이내 (50억원 한도)
설비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금융중심지 창업 신설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사업용 설비 설치 필요자금: 10% 이내 (10억원 한도)
교육훈련	금융중심지로 이전 - 내국인 10명 이상 고용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6개월간 2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금융중심지로 이전 - 내국인 10명 이상 상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6개월간 2억원 한도)

* 금융중심지 보조금은 [부산광역시조례 제6091호, 2020. 2. 5., 일부개정]에 근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제12조1항에 따라 그 지원한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 가능

2. 기회발전특구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제도

1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구분	지원대상	감면대상 및 정도	근거법령
국세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창업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 제1호-제18호의 모든 업종 적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이후 2년: 50% 감면 - 감면한도: 감면받는 연도까지 사업용자산**투자누계액 50% + (감면받는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최대 2천만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6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수도권 3년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2년) 사업한 내국인 ①본사, ②공장, ③기업부설 연구소, ④데이터센터(대지/건물)	- 종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불산입 또는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상속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가업상속 받은 기업 - 기회발전특구 상시근무 인원이 기업 전체 종업원의 50% 이상	(공제대상)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피상속인 10년간 경영참여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기회발전특구 혜택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적용) ① 상속받은 사람이 대표이사 아니어도 적용 가능 ② 기업의 주된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1항, 제25항
	이자·배당 소득세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① 전용계좌가입(10년 이상 유지) ② 종류: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③ 투자대상: 기회발전특구의 부동산, 기반시설 관련 자산 및 입주기업이 발행한 채권·주식 등에 집합투자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세율: 14% → 9% -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지방세	취득세 (취득자산가 4-8%) 특구에 창업 이전 (2028년 12월 31일까지)	50% + 조례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의2
	재산세 (과세표준의 1% 이하) 특구에 창업 이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5년면제 + 조례 5년연장 50%경감	지특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제5조, 남구세 감면조례 제9조의2

* 사업용자산: ① 사업용 유형자산, ② 건설 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형자산, ③ 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 기회발전특구 소득법인세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 이내 창업·신설·양도 시 적용(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 가능)

2 보조금 지원 제도

보조금 유형	지원대상		지원비율
입지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구·남구 (중위)	중견기업(15% + 8%p): 23% 이내 중소기업(30% + 10%p): 40% 이내
		동구 (하위)	중견기업(25% + 8%p): 33% 이내 중소기업(40% + 10%p): 50% 이내
설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기회발전특구 신설 이전	중구·남구 (중위)	중견기업(8% + 8%p): 16% 이내 중소기업(10% + 10%p): 20% 이내
		동구 (하위)	중견기업(12% + 8%p): 20% 이내 중소기업(15% + 10%p): 25%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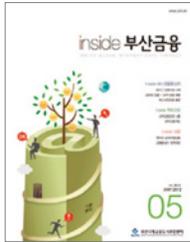
※ 기회발전특구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5-8 제14조, [별표5]에 근거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5-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별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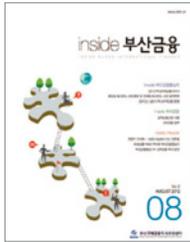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중구·남구 해당)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동구 해당)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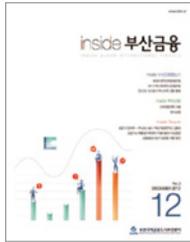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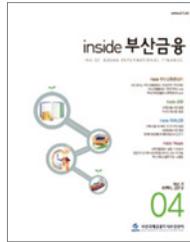
Vol. 1 2012년 5월(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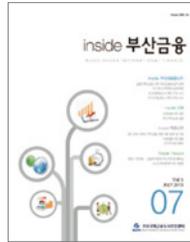
Vol. 2 201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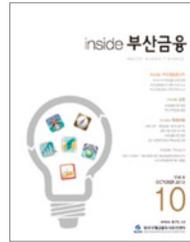
Vol. 3 201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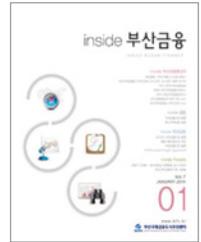
Vol. 4 2013년 4월



Vol. 5 2013년 7월



Vol. 6 201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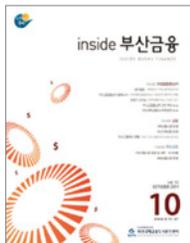
Vol. 7 2014년 1월



Vol. 8 2014년 4월



Vol. 9 2014년 7월



Vol. 10 2014년 10월



Vol. 11 2015년 1월



Vol. 12 2015년 5월



Vol. 13 2015년 8월



Vol. 14 2015년 11월



Vol. 15 2015년 12월



Vol. 16 2016년 6월



Vol. 17 2016년 10월



Vol. 18 2016년 12월



Vol. 19 2017년 8월



Vol. 20 2017년 12월



Vol. 21 2018년 8월



Vol. 22 2018년 12월



Vol. 23 2019년 10월



Vol. 24 2019년 12월



Vol. 25 2020년 12월



Vol. 26 2021년 6월



Vol. 27 2021년 12월



Vol. 28 2022년 6월



Vol. 29 2022년 12월



Vol. 30 2023년 6월



Vol. 31 2023년 12월



Vol. 32 2024년 7월



Vol. 33 2024년 11월



Vol. 34 2025년 7월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New opportunities

The Global Financial Hub, **Busan**

**Busan designated as a Special Financial Opportunity Zone,
heralding a new financial ecosystem**

Busan, as a Special Financial Opportunity Zone, offers substantial benefi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corporate tax exemptions and additional incentives.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exempt from corporate tax for up to five years. For large-scale investments, subsidies and additional incentives are also available.

With renewed incentive program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aspires to harness the world's premier financial ecosystem, evolving into a **Global Financial Hub**.

Experience the future in Busan today



Contact info@kbfc.or.kr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31-0296 FAX. 051-633-0398 www.kbfc.or.kr